

# 가 LAW SCHOOL

미 래 의 희 망 로 스 쿨

2019. JAN + FEB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 己亥年 2019

안녕하십니까? 기해년(己亥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작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매우 의미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은 10,884명의 변호사를 배출하여 2018년 전체 변호사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의 52%를 차지하여 명실공히 우리 법조계에서 그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당초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과장되게 부풀려 마치 로스쿨은 부유층 자제만 입학하고, 등록금이 비싸 입학이 어렵다는 등의 불신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로스쿨은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 등록금의 30%인 장학금 가운데 무려 77%를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별전형 비율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처럼 로스쿨은 10년 동안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힘써 왔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정착시켜야 하며,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하고 전문과목의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는 한편, 로스쿨 평가제도를 간소화하고 현실화해야 합니다.

2019년에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개 로스쿨과 함께 그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법전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순석**

## Contents



2019.  
jan + feb

발행일 2019년 1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김순석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04 **special interview**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 008 **power interview**  
김원영 변호사
- 012 **hot issue**
- 014 **special report**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 현장
- 021 **book**
- 022 **letter from**  
박진택 변호사  
함혜란 변호사
- 026 **real story**  
경북대 로스쿨 강민성 학생  
동아대 로스쿨 배지성 학생  
영남대 로스쿨 이동훈 학생
- 034 **contest**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 038 **happy lawschool**  
인하대 로스쿨 이수호 학생
- 041 **media essay**
- 042 **opinion**  
연세대 로스쿨 이종수 교수  
충남대 로스쿨 손종학 교수
- 048 **campus life**
- 050 **health mentoring**
- 052 **movie talk talk**
- 056 **culture**
- 058 **kals news**
- 060 **book**
- 061 **quiz**

# “도약하는 로스쿨,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사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총회를 개최해 제9대 이사장으로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선출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므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후 약 보름이 지났는데, 꽤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3일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는 제10회 가인법정 변론 경연대회 현장을 찾아 로스쿨 학생들의 뛰어난 변론 실력을 보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8일부터 12일까지는 제8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는데, 시행 첫날과 이튿날 지방권역과 서울권역의 몇몇 시험장을 찾아 법전원 학생들과 관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느덧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성과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전국 25개교에 로스쿨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수도권에 집중되던 변호사들이 지역으로 많이 분산되었으며, 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무변촌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지역 곳곳으로 분산됨으로써 법률 소외지역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성과로는 로스쿨 출신들이 기존 법조인들에 비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 약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에 많이 유입되었고, 이들이 로스쿨에서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된 후 다시 본래의 영역으로 돌아가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라는 난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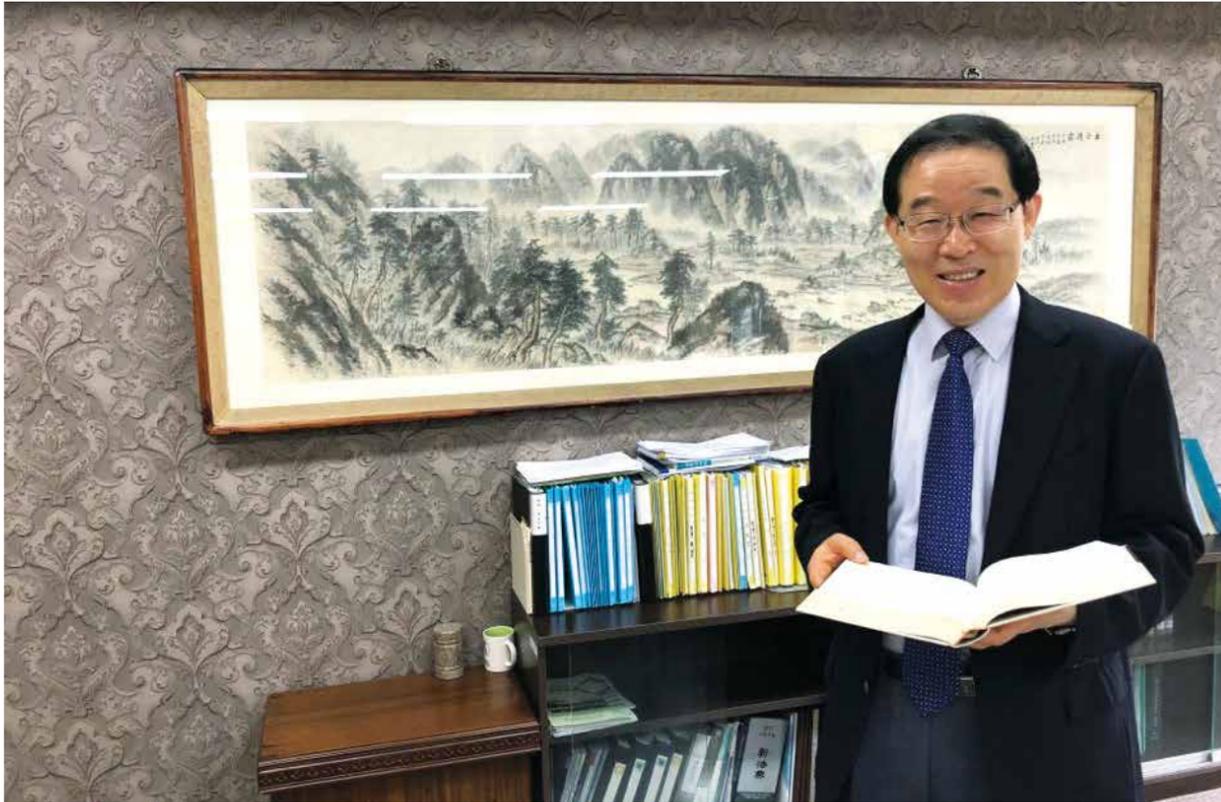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극렬히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외적인 명분과는 달리 송무 분야에서 변호사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이 안정된다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L.M.
-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L.M.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및 사회적 활동〉

-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2013~현재)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2008~2014)
- 한국거래소 코스닥공시위원회 위원장 (2011~2014)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장 (2017~현재)
- 미국 뉴욕주 변호사 (1996.11~현재)
- 사법시험(2006, 2011, 2013), 입법고등고시(2008) 출제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8.9~현재)



협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진출하는 지역의 확대가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 민간분야 특히 기업에서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법전원협의회에서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의 정례적인 회합을 통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적절한 보수와 대우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반을 조성한 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응시자 대비 70% 내외의 합격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전원협의회 역사상 서울 이외의 지역 로스쿨 출신 이사장님 선출은 처음이라 지역 로스쿨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웃음). 현재 비수도권 법전

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한 지역인재 우선 전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 법전원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 학생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선발해야 하는데,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가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아져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 의사·약사 시험과 달리 운영되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 되기 전까지는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장소를 강원, 충북, 전북, 제주도 등으로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로스쿨 도입 10년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및 ‘취업 박람회(Job Fairs)’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입니다.**

로스쿨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이제는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도입 10년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법전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법전원이 참가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법전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매년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졸업생들에게 변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법무법인의 채용정보와 인턴십 모집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채용기관들에게는 우수한 법전원 출신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법전원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요?**

현행 변호사시험은 방대한 시험 범위, 인위적인 쟁점과 다형 출제, 모든 과목이 선택/사례/기록형으로 출제되는 등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전문과목 학점 이수제의 도입과 기록형 시험을 당초 의도대로 법문서 작성을 간단하게 테스트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제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여, 현행 변호사시험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로스쿨 = 금수저’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소득층, 금수저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의 법조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국민들의 인식이 고착화된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5개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어느 교육기관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장

학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학금 중 77%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며, 소득분위 1~3분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스쿨은 저소득 계층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시험 시절과 비교했을 때와는 매우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로스쿨에는 ‘특별전형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교)이 많다보니까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25개교가 처한 상황이나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다르지만,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은 공통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전원협의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각 법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전원협의회에서는 현안 사항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실질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균형있게 하여 수도권·지방, 국공립·사립, 대·중·소규모 법전원의 이해관계가 잘 반영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임기 동안 개인적으로 세우신 목표는 무엇인지요?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각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해야만 제도도 안정되고,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들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는 과목이 너무 많고,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모든 과목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면서 로스쿨 제도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원영 변호사의 유년시절에 대한 기억은 집밖을 떠나지 못한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중증 장애로 인해 열다섯 살 때까지 집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장애란 대체로 불리한 삶의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경험'이라고 말한다. 그가 두 번째 저서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펴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개개인의 아름다움과 존엄함에 대하여

김 원 영  
변 호 사

**현재 대학원에 소속되어 계신데요.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로서도 활동하고 계신건가요?**

대학원에서는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자율성에 관한 법학박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준비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존재라고만 여겨졌던 사람들이 최근 장애인인권운동, 국제인권규범의 영향으로 자율적인 법적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연히 여겨왔던 자율성, 자기결정, 법적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탐구, 그에 기반한 제도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는 서울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습니다. 주로 인권이나 문화정책 등에 관한 자문 업무, 정책연구, 강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와 글쓰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머지 않아 '통상적인' 변호사업무에 주로 시간을 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생계를 유지해야하거든요).

**법조인의 꿈은 언제부터 키우신 건지요? 또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을 선택한 이유도 말씀해주세요.**

저는 학부시절 단 한 번도 법률가의 꿈을 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전형적인' 2000년대 초반의 사회과 학대학 학부생이었습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즐기고, 얼마간 사회운동에 관여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취업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는 언론보도가 학부 4학년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사회학 전공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빨리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로스쿨이 사회적, 신체적 소수자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단 한명에게만 준다고 해도, 그게 바로 저였을 겁니다.

**로스쿨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특별한게 없습니다. 다만 인권법학회를 만들자는 제안 글을 '다음카페'에 올렸고, 2대 회장을 맡으면서 학회 회칙을 정하고 각종 소모임을 만든 기억이 인상에 남습니다. 그 밖의 활동에서 저는 약간 '아싸'에 가까웠고, 다소 부적응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로스쿨 내에서 저는 계층적 괴리감을 꽤 느꼈고 관심사의 차이도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 스스로 가진 편견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좋은

인연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이들 덕분에 저의 세계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하셨어요. 당시의 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로 정신보건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분석, 연구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차별사건이나 인권조례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정신보건 관련해서는 2016년 헌법재판소에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에 관한 위헌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들



사진 이지양

처럼 풍부한 자료나 충실한 헌법이론에 기초한 논리를 만들기는 어려웠지만, 관련 진정사건을 천 건 이상 처리하면서 알게 된 구체적인 실무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만난 정신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은 저의 이후 연구나 활동에도 큰 밑바탕입니다.

**변호사님의 첫 번째 저서인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에 이어 작년 6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출간하셨고, 많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로스쿨 재학시절이던 2010년, 20대 초중반에 써놓은 글들을 정리하고 새로 쓴 글을 더해 출간했던 것입니다. 장애인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제가 어떻게 제도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입학하고 로스쿨까지 다니게 되었는지를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이라는 개인의 희망서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소수자가 얻은 자유와 기회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산물인지를 보이하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나온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은 증언이 아니라 '변론'을 하는 책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해 성소수자, 빈곤한 사람들, 또는 우리 사회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규정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 개개인이 어떠한 근거에서 존엄하고 매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이는 책입니다. 그저 규범적인 주장만 하는 책은 아니고, 일상에 관한 사회학이론, 장애에 관한 각종 논쟁적인 사례들을 동원해서 독자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책이나 칼럼, 기고를 통해서 많은 변론을 하고 계시지만, 법과 제도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나아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최근에는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에 참여하거나 입법운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조금 더 잘하고, 저만이 할 수 있는 문제제기에 관심을 둡니다. 저는 사회적 소수자에 여전히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은중계도 아카데미 영역에서, 그리고 제가 거처온 삶의 궤적을 통해 제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비교적 풍부하게 획득한 소수자입니다. 장애인들은 많은 경우 교육기회에서 소외되고, 사회관계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물론 이는 슬픈 현실입니다만) 제 위치가 가지는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글을 쓰고자 노력합니다. 칼럼 등 외부에 공개되는 글을 쓸 때, 남북관계나 부동산 정책 등 사람들 사이에 관심을 받는 주제에 대해 (또는 '영업'에 도움이 되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서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더라도, 제가 더 잘 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잘 쓰고자 합니다.

**헌법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고 타인을 존엄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는 일은 윤리(ethics)의 문제이고 타인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일은 도덕(moral)의 문제입니다. 윤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최선의 모습이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도덕은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헌법의 명령은 윤리와 도덕을 통합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도 내가 한 사람의 고유한 존재로서 최선을 다해 자기실현을 했을 때 곧 타인에게 최선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교훈적으로 들리는 말 같네요. 책에도 소개한 에피소드 하나만 말하고 그만 두어야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한 친구는, 여름방학 다른 아이들 모두 계곡으로 수영을 가고 저 혼자 집에 남게 되자, "나는 피부관리해야해서 수영 안 갈 거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뻘하고 귀엽기까지 한 거짓말은, 그 친구를 엄청나게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배려로 다가왔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통합이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生)을 살면서 곱질을 깨는 순간이 몇 번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에게 찾아온 첫 번째 순간은 언제였는지 소개해 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연극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타인 앞에 공개적으로 서 본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난생처음 "당신은 도대체 어디있는 겁니까!"라는 대사를 연극이 시작하자마자 큰 소리로 외쳐야했습니다. 연극 연습기간 후반부까지 첫 대사를 뛰어넘고 진행했는데,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침내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면에 갇혀 있던 충동과 에너지가 그 순간부터 분출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안타깝게도 관중의 기질이 생겼습니다(웃음).

**장애라는 부정적 경험이 항상 없거나 제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경험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애를 낭만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는 대체로 힘들고, 불편하고, 불리한 삶의 조건입니다. 장애가 없었다면 저는 더 많은 취미를 누리고, 연봉은 더 높고, 외롭거나 수치스러운 경험을 훨씬 적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는 하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경험입니다. 이것을 소수 언어가 모국어인 경우와 비유하고 싶습니다. 영어권 나라에 태어나면 한국어나 몽골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다른 언어를 공부할 동기가 매우 적고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반면 한국어로 태어났기에, 저는 영어를 공부해야했고, 그 과정은 비록 힘들었지만 저를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삶보다 대체로 더 힘들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안에 얼마나 엄청나고 풍요로운 경험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동시에 저는 영어로 서구세계를 불완전하게나마 경험합니다.

**끝으로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로스쿨 후배들에게 당부 말씀 또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률가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고교시절 대학입시같은 철저한 직업적 위계질서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사람만큼 그 질서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고, 실제로 그 질서가 인정하는 '상층부'(검클빅이라고 하던가요.)의 직업들이 법률가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성장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질서에 정확히 부합하는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승리라고 누가 비웃을거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계의 바깥을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어나가고, 이를 발언하는 일에 용기를 냈으면 합니다. 물론 엄청 어렵습니다. 만약 저에게 어떤 대형로펌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제안한다면 저는 바로 달려 갔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원고를 완성하기 직전까지는.

book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지은이 : 김원영

---

골형성부전증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열다섯 살까지 병원과 집에서만 생활했다.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중학부와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일했으며, '장애문화예술연구소'에서 연극배우로 활약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중이다.

issue 01

서울북부지검, 관내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제4회 학술대회 개최

지난 11월 22일(목)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서울북부지검(검사장 김영대)과 관내 4개 법학전문대학원(고려대, 경희대, 시립대, 한국외대)이 개최한 제4회 「서울북부 법학전문대학원·검찰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는 학계와 검찰 간 소통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검사, 법원장, 교수를 비롯해 51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체포영장 집행과 타인의 주거수색 제한」, 「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관련 실무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_서울북부지검

issue 02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열려 The 10th Korea Moot Court Competition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실제와 닮은 사건을 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원·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여 재판을 진행해볼 수 있는 대회이다. 지난 1월 3일(수)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는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본선 및 결선이 진행됐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2개의 분야에서 예선을 거친 36개 팀이 본선 경연을 펼쳤고, 결선에 오른 12개의 팀 중 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민사부문) 팀과 서울대학교 법전원(형사부문) 팀이 가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출처\_법률신문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실시

지난 1월 8일(화)부터 1월 12일(토)까지 총 4일간(1월 10일: 휴식일) 전국 8개 고사장에서는 제8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됐다. 이번 시험에는 총 3,617명이 출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출원자 3,490명(최종 응시자 3,240명)보다 127명이 늘어난 숫자다. 7회까지 서울 권역과 충청 권역에서만 시행되던 변호사시험은 올해부터 부산, 경북, 전남 권역까지 확대됐다.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과 전문적 법률에 관한 과목(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공·형·민사법의 경우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사진제공\_더팩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은 전남대, 부산대, 한양대 고사장을 찾아 수험생을 격려했다. 특히 변호사시험 첫째날과 마지막 날에는 법전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회원들도 핫팩과 간식을 나눠주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26일(금)로 예정되어 있다.



#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 법률분야 교육의 전문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1월 16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금태섭 국회의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 법률분야 교육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다양한 전문 법률과목을 이수하도록 변호사 시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당초 법전원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밝히며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번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각 선택과목 간 합격률 편차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도록 법전원 학생들이 전문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 주최 및 참석자



개회사를 하는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공청회 좌장을 맡은 건국대 법전원 이승호 원장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인하대 법전원 김인재 교수

## 주제발표 - 김인재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원장)

###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전문법률 과목, 이른바 선택과목)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정한 전문법률 과목의 이수를 법전원 석사학위 취득요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함.
- 하지만 현실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년 낮아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특성화분야 과목 포함)의 교육 과정 운영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법전원의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과 변호사시험의 괴리현상이 매우 심각함.
- 학점이수제의 의의 - 일정한 선택과목의 이수를 법전원 석사학위 취득요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하여, 전문법률 교육 나아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구현.

1안 집중이수방식	- 전문법률 과목/분야(현행 7개 과목 + 추가 과목/분야)를 각각 1분야로 하여, 특정 과목/분야 중에서 3개 이상의 강좌를 이수하도록 함. - 현행 변시제도를 존중하는 방식
2안 확대이수방식	- 전문법률 과목/분야(현행 7개 과목 + 추가 과목/분야)의 전체 과목/분야 중에서, 특정 과목/분야에 관계없이 4개 이상의 강좌를 이수하도록 함. - 학교별 사정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과목군을 제시할 수 있어서 제도의 시행이 용이함.
3안 집중과 확대의 절충방식	- 전문법률 과목/분야 중 1개 과목/분야에서 2강좌(일부 집중)와 그 외의 과목/분야에서 2강좌(일부 확대)를 이수하여, 합계 5개 이상의 강좌를 이수하도록 함. -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시행이 용이함.

-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제 도입에 대한 우려와 대응
  - 예시되는 최소 9학점(3강좌) 이수강제 및 이수학점 최저등급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학점이수제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학점이수제를 도입하여 전문법률 과목의 이수 여부를 각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경우 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험범위를 제한하는 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 있음.

[참고] 제1회~7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

단위:명.%

경제법	국제거래법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환경법	합계
1,708	7,407	797	2,858	395	531	4,082	17,778
9.61	41.66	4.48	16.08	2.22	2.99	22.96	100

**토론 1 홍석모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원장)**

○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 폐지에 찬성하며, 선택과목시험 폐지의 대안으로 전문법률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 우리나라의 전문법률과목과 유사한 개념이 독일에 있다. 독일에서 법조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4년간 대학 법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주(州)별로 공통된 필수과목과 그 외에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중점영역과목」 중 자신이 흥미가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이수해야 한다. 각 대학은 교수의 수, 교수의 전공, 대학별 비전, 지역 특성 등 자기 대학의 특색을 살려서 자유롭게 중점영역과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미디어법이나 컴퓨터법 등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과목을 중점영역과목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 전문법률과목 선정에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것보다 독일처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토론자(오른쪽부터 홍석모 원장, 박상수 변호사, 유동주 기자)



토론자(왼쪽부터 남기욱 대한변협 교육이사, 문상연 교육부 과장, 박기태 법무부 검사)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 최저학점을 제한하는 여부에 관해서는 그냥 학생이 받은 점수 자체를 변호사 시험 점수에 더하도록 하면 D를 받은 학생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는 박탈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학생들이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특정 분야를 택하여 그 분야에서 3과목(또는 4과목)을 이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분야에 관계 없이 3과목(또는 4과목)을 이수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구성, 관심사도 다양하고, 진로 구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도 이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 2 박상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

○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과 실무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선택과목 시험제도는 전문 변호사로서의 진로와는 무관한 특정 과목 선택 편중 현상과 시험 부담 증가로 인한 로스쿨 특성화 및 실무 교육 부실화만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 지금이라도 선택과목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학점이수제 또는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과 실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특히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법전원별 특성화 교육과 선택과목 학점이수제를 연계시킨다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특성화 강화와 법조사회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법학교육과 실무 교육을 통합적으로

로 실시하고자 했던 초창기 법전원 도입취지에 걸맞게 선택과목 학점이수제에 실습과정 참여를 요건으로 추가하고, 법전원 또는 대한변협에서 부여하는 전문분야 인증의 실무 요건에 법전원 재학 중 관련 분야 리걸 클리닉 활동 등 실습과정 참여시간도 포함되게 한다면, 법전원 실무 교육 강화와 재야 법조사회와 학계가 힘을 합쳐 다음 세대의 법조인을 양성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3 유동주 기자(머니투데이 더델 팀장)**

○ ‘학교별 특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5개 로스쿨이 개원 당시 반강제로 ‘특성화’를 표방해야 했었고 일부 학교에선 형해화된 상황이다. 특히 특성화를 유지할 것이라면 사실상 의미 없어진 특성화 과목 수강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버려진 특성화 과목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선택과목 폐지와 동시에 특성화 과목들의 학점이수제화다. 이를 위해서 발표자의 여러 안 중 현재의 7개 과목에서 몇 과목을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각 학교의 특성화 과목을 실질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방식이 논의되어야 한다.

○ 물론 여기에는 ‘변시 합격을 제고’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도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합격을 역시 ‘로스쿨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과정을 성실히 따른 학생들 대다수가 합격하도록 상당부분 제고돼야 함은 물론이다. 합격률이 정상화돼 응시자 대비 80% 수준으로 올라가면 선택과목 폐지를 위한 논의조차 불필요 할 수 있다.

○ 전문법률 분야/ 과목의 확대/ 재구성 방안에 대해선 제2안에 찬성한다. 전문법률 과목의 ‘종류(범위)’ 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2안에 찬성하며, 다만 학교별 특성화 과목을 반드시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토론 4 남기욱 이사(대한변호사협회)**

○ 선택과목 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군을 확장하고, 논술형을 객관식으로 변경하고, 선택과목별 시험범위와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 선택과목 시험은 사법시험에 이어 현행 변호사시험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서 역사상 우리나라의 법조인 배출 시험제도에서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의 학점 이수제보다는 집중적인 수험준비가 이루어지는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유지가 다양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지식 습득에 더 효율적이다.

○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선택과목 이수제는 ①필수과목화와 엄격한

상대평가 및 이수최저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한 이를 통하여 법전원의 전문법률교육 정상화를 구현하기 어려우며, ②현행 변호사시험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쓸림현상도 충분히 해소할 수 없고, ③특히 법전원협의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수학점 최저등급 C-는 하위 10% 미만에 해당하므로 선택과목 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등의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 새롭게 대두되는 전문법률분야를 포섭하기 위해 선택 과목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 방식을 논술형(사례형)에서 객관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광범위한 지식을 측정할 수 있고, 논술형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도 선택과목군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토론 ⑤ 문상연 과장(교육부)**

○ 로스쿨의 입시와 관련하여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전원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교육부에서도 입학의 공정성,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한 바 있다. 법전원이 그동안 금수저만 가는 곳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도 확대하고 취약계층 입학도 확대했다.

○ 오늘의 주제인 '선택과목시험의 폐지와 학점이수제 도입'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전원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것에 공감을 한다. 최근에 법전원이 변호사시험 준비 기관처럼 되어가다 보니, 법학 교육의 황폐화

등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

○ 학점이수제 도입의 전제조건은 학사관리에 있어서 더욱 더 엄격화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적 보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법전원 평가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인프라 측면을 중점으로 평가했다면, 향후에는 법전원의 질적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전원 평가 기준에도 향후 법조인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핵심 역량 기관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학점 이수제 등이 이와 맞물려서 논의된다고 하면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의 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향후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을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토론 ⑥ 박기태 검사(법무부)**

○ 법전원이 도입된 지 10주년이 넘었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전원 제도는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본다. 사법시험 이전에 고등고시 사법과 작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기까지, 또 현재의 변호사시험에서도 선택과목이 계속 시험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초 제정 법안부터 존재했다. 선택과목의 경우 시험 출제 적합성을 기준으로 고려하기로 한 것으로, 특정 법전원의 유불리 없이 과목으로 선택하도록 정하였다.

○ 선택과목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이 높다는 것과 법전원 교육의 형평화가 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선택과목을 두게 한 취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선택과목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검증하고, 전문적 과목에 대한 능력을 검정하게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재의 선택과목이다.

○ 만약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면 충실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5개 법전원의 커리큘럼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없는 학점이수제가 시행되도록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각 학교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제도를 운영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더 부실해질 수도 있다.

○ 소규모 법전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일부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인 로스쿨도 있으며, 3학점이 아닌 2학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교육 부실화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일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을 줄 수도 있다.



열띤 토론이 벌어진 공청회 현장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질의를 하는 로스쿨 재학생



공청회에 참석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공청회에 참석한 로스쿨 학생들

공청회 참석자 의견

**강영준 학생(성균관대 로스쿨)** -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출신들이 다양하게 로스쿨에 진학해 있다. 학점 이수제로 가게 되면 이러한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 영역의 과목을 또 다시 수강해야 하는 낭비가 발생하며, 이들이 더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경우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선택과목도 P/F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진욱 학생(한양대 로스쿨)** - 학생들은 자기 소개서에 어떤 전문법률 분야를 공부할 것인지 기재하고 입학하지만, 실제로 그런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로스쿨 학생들은 주요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선택법은 3학년이 되면 수업에 유리한 과목을 하나 골라서 공부하게 된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현상이 법전원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공·형·민 기본과목 공부를 하다보면 다른 선택법 과목에는 우선 순위가 부여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수강을 원해도 폐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은선 학생(제주대 로스쿨)** - 학점이수제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점이수제가 전문가가 되기에 훌륭한 제도라면 공·형·민법에 대해서는 왜 시행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이곳에 있는 학생들이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만약 시험이 절대평가, P/F로 된다면 모두 다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찬성의 속내는 정말로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개발할 기회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변호사시험의 한 과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에만 매몰되는 것이 과연 선택과목

때문인가? 선택과목을 학점이수제로 바꾸면 해결되나?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전공분야가 무엇이든 그것과는 별개로 특정과목을 일정시간 공부해서 변호사시험 대비를 한다. 그것이 진실이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면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하든, 그 대안은 왜곡되고 뒤틀린다.

**김순석 원장(전남대 로스쿨)** - 대한변협의 남기욱 교육이사님의 말씀에 대해 로스쿨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선택과목을 꼭 시험으로 해야만 법조인의 이론 및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국제거래법을 실무에서 종사하게 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시험이 존속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홍승기 원장(인하대 로스쿨)** - 국제사법을 공부했지만 필드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를 할 것이다.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선택과목 시험으로는 전문성이 길러지지 않는다.

**남기욱 이사(대한변호사협회)** - 선택과목을 P/F로 운영하면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과연 법전원의 교육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리고 국제사법은 실무를 하다 보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선택과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원리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린 것이다.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를 마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언

6인의 토론자 중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되지 않고 현재대로 운영되며, 학점이수제의 도입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함을 밝힌다.

- ①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한 자는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특별전형제도,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 또한 변호사시험에서 대부분 합격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학생들이 과거의 사법시험 시절과 같이 시험에만 몰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비롯해 특성화·선택과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ook

# LEET

##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01 언어이해 I** (2019~2015학년도)     **02 언어이해 II** (2014~2009학년도)     **03 추리논증 I** (2019~2015학년도)     **04 추리논증 II** (2014~2009학년도)

- 법학적성시험 출제·시행기관이 직접 기획한 공식 해설서
- 출제에 참여한 최고의 교수진이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해설
- 제1회 시험부터 2019학년도까지 전체 11회분 해설 최초 동시 출간
- 시험 대비는 물론 지적 즐거움과 높은 수준의 사고력 훈련까지!

introduce



LEET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지은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부로부터 법학적성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소로, 법학적성시험에 관련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기획하였다.

- ① 회차별·영역별 출제 방향 정리
- ② 문항별 유형 및 평가목표 공개
- ③ 출제 근거에 기반한 명료한 풀이

- 특별부록 1** 법학적성시험 논술영역 1회~11회 23문항 전체 수록
- 특별부록 2**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험지 & OMR 답안지 수록

# 내가 경험한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



법무법인 범승

박진택 변호사

## I. 들어가며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변호사'라 함은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송무변호사'를 뜻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고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일명 '사내변호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기준 '사내변호사'의 숫자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내 4대기업 내 변호사 숫자만 합쳐도 1000명이 넘는 등 '사내변호사'는 이미 신입변호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변호사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등을 쓰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된 후 자신이 '사내변호사'로 성장할 것인지, '송무변호사'의 길을 택할 것인지 한번쯤은 고민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후배 법조인분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하고자, 짧게나마 제가 경험한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의 장점을 다소 주관적인 관점에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 II. 사내변호사의 장점

사내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법무뿐 아니라

M&A, 대관, 컴플라이언스, 내규관리, 인사/노무, RM(Risk Management) 등에 이르기까지 회사 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세무/인사/노무/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으며, 이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한 법률적 지식과 융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변호사는 기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Risk에 관여하고 이를 해결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임원 또는 CEO를 꿈꾸는 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큰 조직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또한 회사 내 법무팀에 속해 있었지만 대내적으로는 영업, 인사, 재무, 회계, 대외협력팀 등과의, 대외적으로는 각종 협회, 유관기업, 공정위/금감원 등과의 CO-Work를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사내변호사의 적성에 50%는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고용 안정성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비교적 보장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입사 후 1~5년 사이에 회사를 옮기는 송무변호사와 달리, 제가 본 정규직 사내변호사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적을 두고 일하고 있는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측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회사의 만류에도 불

구하고 사내변호사들 스스로가 더 좋은 커리어를 만들기 위하여 나가는 케이스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발적인 일이 많고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야근/주말반납을 해야 하는 송무변호사의 업무에 비해, 사내변호사의 업무는 그 양과 마감기한이 일추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퇴근이 가능했으며, 6개월 간의 수습기간에도 송무변호사의 신입평균급여를 상회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었습니다.

## III. 송무변호사의 장점

송무변호사의 장점은 역시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하게 공부한 법리와 기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재판정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Legal mind와 법적논리를 펼치는 것은 저에게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법리나 판례를 만들어낸다면 변호사로서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수행하는 소송업무만 잘 처리한다면, 그 외에 조직적/부차적인 문제에 집중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유의 업무 이외에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보고받는 상사의 취향에 맞추기 위하여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형식'만을 몇 시간을 들여 수십번 고쳐야 한다거나, 불필요한 저녁자리에 참석하는 일 등이 그러했습니다. 그 외에 무조건적인 일 밀어내기와 법무팀으로의 책임전가, 그리고 사내정치 또한 사내변호사분들이 불만사항으로 말하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로펌에 와보니 다행히 형식적/행정적/절차적 문제는 사무직원분들이 도맡아 도와주었으며, 그 외 조직 내 상하관계나 알력다툼이 존재하지 않아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무변호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들은 대부분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중대한 일을 당하고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사적으로는 본인의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형사적으로는 자신의 인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너무도 절실하였고, 저 또한 저를 믿어준 의뢰인분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도왔다'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IV. 마치며

주변을 둘러보면 사내변호사로 일하다 '내가 변호사인가? 회사원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 송무에 대한 갈증으로 인해 송무변호사로 이직한 케이스, 송무변호사로 일하다 높은 근무강도와 의뢰인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사내변호사로 이직한 케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여러분들 또한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선택에 있어 타인들의 선호도를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변호사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신 예비법조인분들이 모두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시어 훗날 만나 뵈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택 변호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범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것은 '세상엔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인 만큼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신적으로 응원해줄 수 있는 변호인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프로필>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KG이니시스 사내변호사  
現 법무법인 범승 대전사무소

## 국선전담변호사의 하루



의정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함혜란 변호사

로스쿨 재학 중 마주한 어려움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변호사가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막상 변호사가 되어보니 학생일 때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하루하루가 대개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성취감을 주기에 저는 오늘도 법정에 섭니다. 앞서 걷는 자가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겪은 경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현재 저의 일인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하루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모 지방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임명하는 위촉 계약직이고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 고등법원별로 선발합니다. 해당 지방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되면 오직 그 지방법원의 형사재판 국선변호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월평균 30여 건의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는 사선 변호인으로서의 역할과 동일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오전 9:00 ~ 10:00

/

출근하여 직원으로부터 부재 시 왔던 메모들을 전달받아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들이 보낸 반성문, 진단서 등 간단한 정상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통 10:00부터 오전 공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읽으면서 법정에서 변론할 내용을 점검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주 늦거나 깜빡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직접 전화해서 오늘 출석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오전 10:00 ~ 12:00

/

오전에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는 대부분 증인신문이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오전에 4~8건의 사건에 변호인으로 출석합니다. 다툼이 없어 간단히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다투는 사건은 피고인의 부인 취지와 증거 의견을 밝히고 양측의 증인 신청 등 추가 증거를 위한 주장까지 개진되기 때문에 공판이 다소 길어지기도 합니다. 공판이 끝나면 피고인에게 오늘 공판의 내용과 향후 진행 방향을 설명해드리고,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후 1:00 ~ 3:00

/

형사사건 변호인이 법원만큼 자주 가는 곳이 교도소와 구치소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기록을 미리 읽고 접견 신청을 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보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더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록에 담긴 진술과 현재 주장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다투

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무죄 주장의 취지, 추가로 제출할 증거의 존부 등을 논의합니다.

피고인들 대다수는 현 상황에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변호인은 이 날 것의 말들 속에서 공판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정제하여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주 1회는 교도소에 접견을 가게 되고, 한 번 방문했을 때 평균 3~6명의 피고인들을 면담합니다.

오후 3:00 ~ 6:00

/

사무실에 돌아와 오후 공판준비를 합니다. 오후에 열리는 공판은 대부분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피해자가 출석하는 증인신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의 수, 예상되는 증인신문의 내용에 따라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잡힙니다. 보통은 한 번에 3명 이상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정상 한 기일에 몰아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에는 5명까지도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증인의 경우 변호인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했던 기존 진술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존 수사기록 및 새로운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적대적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형사재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변호인에게 가장 많은 공이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판이 없는 시간에는 형사재판부에서 열리는 인신보호 사건의 구제청구인을 만나기 위해 정신병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불구속 피고인들을 만나 사건 진행에 앞선 면담을 하거나, 변호인 의견서, 증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 등 공판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이 열려있는 6시 전까지는 수시로 피고인들의 전화, 재판, 접견, 면담 등이 유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해서 서면을 쓰기가 어렵고 이에 부득이하게 야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직업의 만족도가 높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가진 환상을 걷어내고 그 직업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지

만 지루하고 빛나지 않는 업무를 묵묵히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고, 직업으로 빛나는 순간은 어쩌다 한 번 오기 때문이지요. 제가 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일의 가장 대부분은 절박한 피고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 법령과 판례를 뒤지며 서면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는 등 뿌듯한 순간은 어쩌다 만나는 무지개와 같은 일입니다. 무지개를 만나는 일도 기쁘지만, 저는 이 일의 가장 평범한 부분을 좋아합니다. 비록 패색이 짙은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피고인에 입장에서 높은 법정을 향해 소리쳐야 하니까요.

로스쿨에서의 일상이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계를 깨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힘에 겹고 버거운 것이 당연합니다. 무지개와 같이 행복한 순간은 시험이 끝난 날 느끼는 달콤함만큼이나 짧겠지요. 하지만 가장 평범한 하루를 사랑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가 누군가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함혜란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고인이 될 수 있고 패색이 짙은 사건이라도 확정 전까지는 무죄라는 신념으로 법정에서 섭니다. 대한변협신문 필진으로 활동하였고 변호사라는 일과 일을 둘러싼 세상을 글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現 의정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경북대학교 로리뷰 소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강민성

### 경북대 로리뷰의 역사

경북대 로리뷰는 경북대 로스쿨이 생긴 역사와 함께한다. 2009년 당시 기초법 교수님이었던 김창록 교수님의 제안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경북대 로리뷰가 탄생했다. 로스쿨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도 했고, 학생들의 법학 자체에 대한 관심도 상당해서 논문 위주의 학술지로 발간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법학사보다 비법학사가 증가하면서 학술지로서의 성격보다 복합적인 학교 교지의 느낌으로 변해가고 있다. 디자인이 좀 더 세련되게 바뀌고 변호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 등 좀 더 실용적인 내용이 담기게 된 것이 장점이라면, 좀 더 깊은 수준의 법학적 연구를 더는 다루지 않게 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로리뷰 구성과 만들어지는 과정

1~3호까지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논문과 э세이가 주를 이루었지만, 4호부터는 거의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발간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로리뷰가 만난 사람들로 명사 인터뷰다. 법조인 중에서 다양한 진로로 진출한 사람들이 많기에 인생 선배로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명사 인터뷰는 사실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도 인터뷰하는 약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에 많은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 인터뷰는 캐스팅이 절반이라는 말을 로리뷰에서 절실히 깨달았다. 말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이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많아 맨땅에 헤딩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호 로리뷰에서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뉴욕에 로리뷰를 보낸 적도 있었고, (물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거절을 당했었다) 당장 이전 호에서도 이정미 헌법재판관님과의 인터뷰약속을 잡았으나, 갑작스레 탄핵 재판에 참여하게 되어서 인터뷰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래도 수많은 노력의 결과로 경북대 로리뷰에 현 대통령인 문재인 변호사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강금실 법무부 장관, 양창수 교수님 등 다양한 명사들과의 인터뷰를 실을 수 있었다. 앞의 예시와 같이 엄청 유명한 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학교 선배들이나 평소 학생들이 관심가질 만한 분야의 유명한 법조인을 인터뷰하기도 한다.

다음은 논문공모전에 수상한 논문을 실는다. 매년 (현재는 2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 대구 지방변호사회와 로리뷰가 함께 전국 로스쿨 논문공모전을 실시해 교수님들의 평가로 선정된 수상작들을 로리뷰에 실는다.

학교생활이 바쁨에도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한 연구로 탄생한 양질의 논문들을 보면 로스쿨이 법학전문대학원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다시 가지게 된다.

세 번째는 교수님들의 논문이다. 과거에는 교수님들이 하신 깊은 연구에

대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로리뷰의 변화에 맞추어 무게감이 있는 논문보다는 사회적 이슈에 맞는 소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7호 로리뷰에는 동성애 문제와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문제들이 다루어졌었다.

마지막은 학생들이 작성하는 글들이 들어가는 코너이다. 방학 때 가게 되는 각종 실무수습에 대한 후기와 동아리 활동, 판례에 대한 비평 등이 여기에 실리게 된다. 이외에도 그냥 로스쿨생으로서 쓰고 싶었던 법학 관련된 글들이 자유롭게 실리기도 한다. 변호사 시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선배들이나 교수님, 혹은 강사님들의 공부 방법론도 최근에는 이곳에 추가하기 시작했다.

이번 로리뷰도 이처럼 준비를 하는 중이나 조금 더 다양한 코너를 준비하는 중이다. 아무래도 로스쿨에 들어오는 연령대도 어려워지고 변호사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진학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 좀 더 진



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나 유희거리를 추가하는 것도 어떻게 고민 중이다.

로리뷰 활동은 학기 중에는 회의만 진행하고 본격적인 편집 작업이나 인터뷰는 방학 때 이루어지는 편이다. 학기 중에는 다들 학업에 시달리는 편이기 때문에 여유를 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방학 때 어떠한 내용을 채울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한다.

#### 로리뷰에 대한 관심을...

‘로리뷰’를 처음 알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당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그의 자서전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었는데, 나 역시 그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이었다. 그 자서전은 오바마가 하버드 로리뷰 편집장이던 시절에 기초를 써둔 책이었다. 최고의 엘리트만이 될 수 있는 로리뷰의 편집장을 흑인 최초로 맡게 된 오바마의 삶이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변호사가 꿈이었던 나는 그의 삶을 따라가고 싶었다. 마침 그때 나의 별명이 오바마이기도 했고 로스쿨이 생긴다고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대던 시기라 10년 뒤에 나도 오바마처럼 로리뷰 편집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했었다. 사실 로리뷰가 뭐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고 그저 멋있겠다는 생각만을 가진 철없는 시절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난 로스쿨에 입학했고 원하던 로리뷰의 편집장이 되었다. 오바마가 자신의 자서전을 썼던 27살의 나이가 되기도 했지만, 과거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지



는 못했다. 그리고 이곳 경북대의 로리뷰도 내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달랐다.

일단 로리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다. 10명 이상이 활동하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5명에서 꾸리고 있다. 비단 로리뷰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갈수록 내려가면서 다양한 학회들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단순히 법학에 대해 연구를 하는 학회는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되도록 시험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이 다루어질 뿐이고 공부에 지쳐 쉴 시간도 부족한 학생들이 무언가를 연구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사치처럼 취급된다.

두 번째로는 로리뷰의 성격이다.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로리뷰에서 논문 한 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던 나였다. 하지만 막상 학교 생활을 해 보니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3학년이 코앞인 지금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 흐름에 따라 로리뷰도 변호사 진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변해가는 중이다. 독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로리뷰가 기존의 학술지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게 한편으론 아쉽기도 하다. 로리뷰가 사라진 학교들도 있지만, 아직 몇몇 학교에서는 로리뷰에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논문을 싣고 있다고 들었다. 다 같은 로스쿨인데 누군가는 그런 것을 해내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 학교 로리뷰도 몇 번의 위기를 겪어 사라질 뻔하기도 했지만, 법학에 대한 폭넓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 로리뷰 활동은 지속했으면 한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더라도 로리뷰라는 이름으로 법학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쓰이는 교지면 그저 만족할 것 같다. 경북대 로리뷰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로스쿨의 로리뷰 파이팅이다.

## 로스쿨생이 바라본 일제 강제 징용 배상판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배지성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나왔다.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신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된 것이다. 본 판결이 나오자 모든 국내·외 언론들은 국제적 핫이슈라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연일 보도했고, 정치권에서도 판결로 인한 한일 관계의 파장을 우려하는 등 계속 회자되었다.

본 판결의 주요쟁점은 한일 간 협정으로 강제징용을 한 일본기업의 배상 의무는 없어진 것인지 여부였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해외자관 목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을 하였다. 이 때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는 대신 강제동원자에 대한 미수금, 피해보상금 등을 그냥 넘겼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배상이 이루어졌으므로 배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고,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항하였다.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3억 달러와 상계한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판결 이후의 쟁점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유사소송이 총 15건이 계류 중이다. 전범기업들의 배상금액은 최소 400억 원 이상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 진짜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판결 이후 일본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반발이 일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외교적 예절인 악수도 하지 않은 채 한국 대법원 판결은 배상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신일본체절처럼 징용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판결을 거부하라는 방침을 일괄 전달했다. 또한 한국 법원이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외 언론에 호소하고 있다.

**2. 한국 법원이 강제집행 하면 되지 않을까.** 전범기업이 일본국의 지침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다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에 기해 (가)압류 및 추심 등 강제보전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국내에 자산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 신일본체절은 포스코 지분을 7,000억 원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이기에 미국법원에서 한국법원의 판결문을 승인 및 집행허용을 해주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힘들다. 일본법원이 한국법원의 판결에 승인·집행허용을 해주지 않을 것이란 것은 더욱 명백하다.

**3.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중재 절차를 한국에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중재 절차 진행 요구가 한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본 사안이 걸로서는 한

국과 일본 간 분쟁인 것으로 보이지만, 징용 피해자들인 개인과 전범기업 사이의 민사적 분쟁이기 때문에 국제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만일 국제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더욱 유리해진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과거 만행을 공론화하여 알린다면 일본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본다.

**4. 다른 징용 피해자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이번 소송의 원고 이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기산점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이번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재상고심으로 환송판결이 난 2012년 5월 24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2015년 5월 24일부로 소송 당사자 이외의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되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점이 된다. 문제는 이 기산점을 언제부터로 볼 지가 된다. 대법원 환송판결로 피해자가 승소한 지난 2012년 5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201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5. 사법 농단 사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다?** 해당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이끌어낸 원고 측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국가의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 5월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2013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모여 2012년 5월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아 일본 기업의 배상부담을 덜어주는 대외비 문건이 발견되었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음모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정농단의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법리는 빈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일로 주장해야 한다.

**끝으로 흥미진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재해석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나마 열어준 대법원 판결은 아주 흥미로운 이슈를 던져준 것 같다. 전쟁범죄와 관련한 대가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확실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앞으로 한일 간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진통을 통해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제기될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를 비롯해 후속 판결이 나올 것이다. 좋은 판결과 일본 정부의 바람직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재학생이 바라 본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선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0기 이동훈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이동훈입니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저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연령대는 물론이고, 비법학과와 사법시험 장수생, 기혼자와 미혼자, 갓 학부를 졸업한 원우와 오랜 직장생활 경험자 등 다양각색의 경력을 갖춘 원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원우들과 교류하며 또 학생회장으로서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관련된 여러 시책에 대해 단견을 지니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들을 이 글을 통해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에 걸맞는 전문 교육의 필요성**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부 및 직장을 통해 각계각층의 경험을 쌓은 지원자들을 선발하여, 법학을 교육함으로써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무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sup>1)</sup>입니다. 즉 법과대학(또는 법무대학원)에 과거의 사법연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수원을 접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가지의 목적(이론 및 실무 교육)을 모두 추구하려다 보니, 오히려 두 기능 모두 놓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즉 법학전공자 또는 사법시험 경험자에게는 학부 시절의 교육을 답습할 뿐 실무 교육이 미진하며, 비전공자에게는 방대한 내용을 소화시키지 못한 채 걸 할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더욱이 점점 낮아져만 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자 양성보다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와 무관한 학결과 오래된 판례의 답습을 지양하여 이론 교육을 축약함으로써 비전공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접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 및 그 적용례, 집행법을 위시한 기타 특별법의 교육을 하는 등 교육 과정의 재정비를 통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부담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3. 학점 평가에 있어서의 불공평성 보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통과한 변호사들은 사내변호사·로펌 등 사기업뿐 아니라 로클릭(재판연구원)·검찰 등 공직에서 공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적 기관에서 지원자 선발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민사(형사)재판실무 수업의 전국 단위 시험 및 면접 등 다양한 척도를 마련하고 있고, 그 중에는 학점 역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학점 평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독립적이고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학점 평가에 있어 불리하거나 유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법고시 유경험자가 많은 학교에 입학하게 된 비전공자들은 다른 학교의 비전공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을 취득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P/F 과목 및 민법과 같은 필수 과목의 이수 학점에 있어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역시 비슷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지방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충을 목적으로, 각 지역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배분하고 지역인재 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sup>2)</sup> 반면 사법고시를 비롯한 각종 법학 관련 고시 경험자 및 기업 법무팀 경력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바, 신입생 선발 시 연령 제한이 비교적 덜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 비전공자들은 학점 경쟁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바, 이는 지역 안배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시험 과목의 증설, 절대평가제의 도입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학점을 평가하는 현행의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지방대학의 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인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국가장학금 배분의 전국적 시행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전국 단위의 소득분위 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배분에 있어서는 국가지원금을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배분한 후, 각 학교별 내부기준 및 장학기금에 따라 분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을 기반으로 지급되어야 할 국가장학금이, 경제력이 아닌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냐의 기준에 따라 분배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령 소득분위 산정 시 동일하게 5분위에 속한(서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A, B 두 학생은 동일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기들의 경제력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게 됩니다.<sup>3)</sup> 이러한 현상은 ‘국가’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혼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집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산정 시, 기혼자 역시 자신의 직계존속의 소득만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량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소득을 함께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라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 금융소득 등 자산 상태를 철저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헛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배분에 있어서 전국적 기준을 마련하는 개선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5. 생활비 대출의 상한 상승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 양성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을 비롯하여 전문가격증을 취득한 지원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sup>4)</sup> 이러한 이유로 재학생들은 일반대학원에 비해 연령 및 기혼자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학비 및 생활비를 가계에서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외에 학기당 150만원의 생활비 대출만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달 기준 3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생활비 대출 금액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학부생에게는 적정한 기준일 수 있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는 현실적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자취생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법학전문

3) 가령 A학생의 학교에는 1~3분위의 동기들이 많은 반면 B학생의 학교에는 6~10분위의 동기들이 많다면, 동일한 소득분위임에도 A학생은 0원, B학생은 전액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원의 구조를 고려한다면, 월세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생활비 대출 금액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학업 외에 근로 활동에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소위 사시낭인을 방지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학업에만 몰두하더라도 합격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변호사시험인데, 근로와 병행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활비 대출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시낭인을 방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6. 마치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금수저 논란 등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아닌, 제도 내에서 당사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지면을 통하여, 1년 동안 학생회장으로서 들은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학생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에 걸맞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 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여 학업에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군사재판, 어디까지 경험해봤니?

## 제2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에게 군형사 소송절차를 알리고, 군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군사법에 대한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찬 제2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현장을 찾았다.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홍창식

“이번 변론경연대회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군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를 계기로 군사법원이 군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 ■ 참가자격 및 팀의 구성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2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된 팀이 참가할 수 있고 다만 팀 구성원 3인은 동일 로스쿨에 재학중이지 않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 경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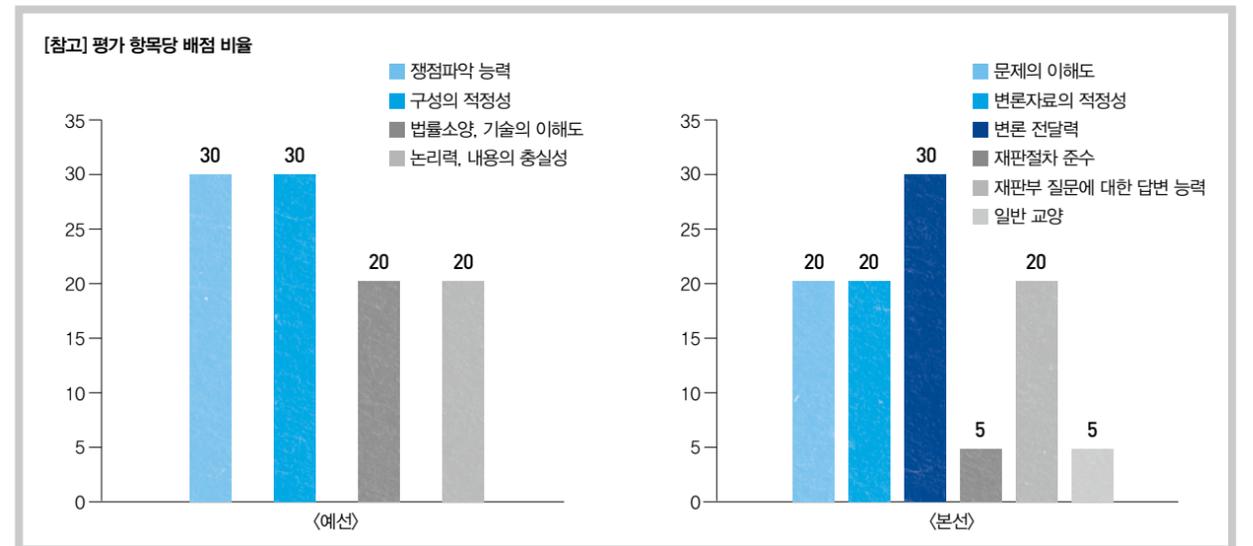
서면평가	법정 경연
(예선) ● 문제 출제 후 두 가지 서면 제출 ① 군검사 의견서 ② 피고인측 변론요지서 ※ 하나만 제출시 탈락  ● 예선심사 후 본대회 진출팀 선발 (상위 12개팀 이내)	(본대회) ● 본대회 전 추첨을 통해 군검사 / 피고인측 팀을 정함 ● 경연시간: 35분 ● 경연방법: 주 변론 → 재판부 질의·응답 → 최종변론 ※ 주 변론은 팀당 최대 10분 이내, 한 사람당 3분 이내, 2명이 나누어 변론.



재판부 앞에서 변론을 하는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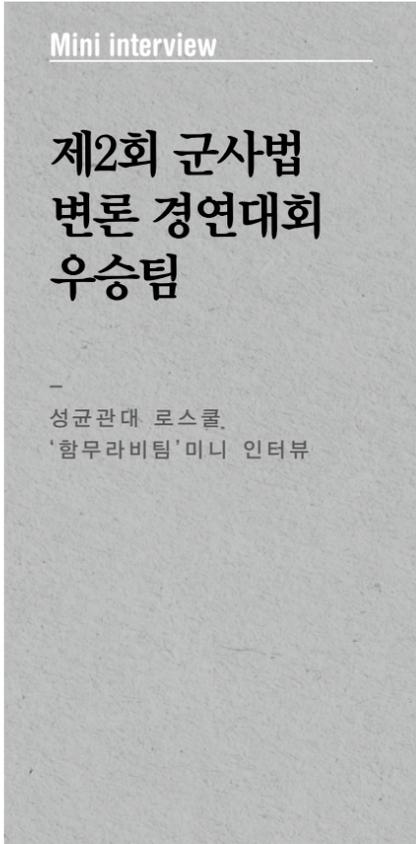


참석자 단체사진



### ■ 수상 내역

구분	수상팀	상금
국방부장관상(1팀)	함무라비(성균관대)	200만원
대한변호사협회장상(1팀)	패기있는 미필트윈스 (충남대)	각 100만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1팀)	군변하장(한양대)	
각 군 참모총장상(3팀)	옥기독기(한국외대) 미필과 전문연(성균관대) 고노도(전남대)	50만원
최우수 변론상(1명) (교육부장관상)	오메가3 임은석(연세대)	



룡한 동기이자 매우 똑똑한 팀원이고, 개인적으로는 제게 든든한 형들입니다. 대외활동에 관심을 두던 영준이형과 제가 대회 설명회에서 만나 팀을 결성했고, 형사법을 잘 하며 원래 저와 친하게 지냈던 동헌이형이 합류함으로써 3명이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경연대회의 문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군 검사 의견서와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서면 심사는 각각 어떤 논리와 쟁점을 담아서 준비했는지 소개해주세요.**

**김동헌**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압수수색과 증거조사와 관련한 부분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었기에 검사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지 해당여부를 입증하는데 주목했고, 변호인은 증거의 압수수색 및 그에 따른 진술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형사소송법 수업을 아직 듣지 않은 1학년이다 보니 교과서 목차와 색인, 다양한 기사검색을 통해 문제의 사실관계가 어떤 부분과 연관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문제가 뒤틀린 부분은 모두 체크해서 교과서, 선배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차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압수수색이 정당한지, 그리고 실체법적으로는 이것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며 탐지, 누설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각각 다루었습니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를 단순히 판례 뿐 아니라 균형법적 관점에서 검토했습니다.

폭행과 관련해서 저희는 공소장변경으로 직무수행자폭행죄를 검토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문제에서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와 합의했었다고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형법상 폭행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착안해서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차후에 검토해보니 균형법의 조문에 의거 군사시설과 관련된 장소 등에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배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공소장변경이 이번 문제에 더 적합한 법리라 판단했고 이것이 가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교재를 참고해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실제와 유사하게 작성해 본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견서에서는 직무수행자폭행죄의 각각 구성요건에 포섭된다는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회라는 한계상 미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요지서에서는 공소장변경에 맞춰서 작성하였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직무수행 중이 아니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구성요건을 나열한 다음, 의견서에서는 구성요건 모두에 포섭됨을, 변론요지서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성 간 추행이고, 추행행위의 양태가 다소 애매하였기에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김효범** 우승도 기쁘지만, 비법학사 출신 1학년들이 모여 형사소송법을 독학해 가며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대회든 우승이라는 결과는 팀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하며, 거기에 주변의 도움과 당일의 운도 따라야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부족한 팀장인 저를 잘 이끌어준 두 분 팀원 형들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팀원 소개 및 대회에 참석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김효범** 팀원인 강영준, 김동헌 씨는 홀



함무라비팀

기사자료나 다른 판결들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서면심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강영준** 문제에서 누락된 쟁점이 없도록 몇차례 스터디를 통해 문제 속 사실관계에서 발견되는 쟁점을 모두 찾아서 서면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형법총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최대한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던 것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두변론을 해야 하는 본선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웠나요?**

**강영준**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이 실제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할지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고민했습니다. 문제에서는 통신관련 장비현황, 155mm 고폭탄 폐기량 정보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지만 이를 활용해서 현대전에서의 통신의 중요성, 155mm 고폭탄은 우리 군 주력무기인 K-9 자주포에 사용된다는 식의 군사법 특색에 맞는 사안포섭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함무라비팀 강영준 학생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

또한 군검사 모두진술 때는 증거능력 관련 형사소송법적 쟁점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실체법적 쟁점을 충실히 이야기 하고, 대신 변호인이 지적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반박할 지를 몇 차례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덕분에 실제 변론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를 문제삼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김효범** 마지막으로 주변론 역할을 분담할 때 최대한 세 명이 균등한 분량을 맡을 수 있게끔 했고, 주어진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했던 것 역시 사소하나마 차별화된 부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강영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법 판례를 정리해서 판결요지집을 내고 있고 군사법 관련 교과서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나온 부분들이 기존 교과서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는 부분이다 보니 제한된 판례를 갖고 논지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김효범** 또한 1학년으로만 구성된 팀이다보니 형사소송법적 쟁점을 전혀 몰라 고전했는데, 2학년 선배에게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대강 어떤 형사소송법적 쟁점이 보이는지를 물어본 뒤, 그것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저희끼리 심도 있게 공부하여 필요한 부분만 차용함으로써 극복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으며, 제3회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함무라비팀** 이제 형법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지금 배우는 내용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균형법이라는 한정된 분야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저희처럼 비법학사 출신 1학년으로만 구성된 팀이라도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매일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인하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수호 학생은 치과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경력과 직업을 가진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 중 하나였으므로, 그는 로스쿨과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수호 학생을 만났다.

### 의학도, 법학과 만나다

중국 북경대학교 의학부 치의학과(구강의학과) 수석 입학, 중국 치과의사면허 보유, 레바논 파병. 이수호 학생과 대화를 나누기 전부터 그의 다채롭고 독특한 이력이 먼저 눈길을 끌었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중국으로 진학한 그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바로 월반했을 만큼 명석한 두뇌와 이를 뒷받침하는 끈기와 노력으로 승부하는 학생이었다. 열심히 공부한 끝에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북경대학교 의학부 구강의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이후로는 계속 치과의사를 꿈꿨다. 그는 약 7년간(본과 6년 + 수련기간 1년)의 치의학 공부를 마친 후 군입대를 위해 잠시 한국에 귀국했다.

“중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내재해 있었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군에 입대해서 레바논으로 파병 가 있을 무렵 사드문제가 발생했는데, 한중 갈등의 양상을 지켜보면서 외국인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법률지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지금까지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법학의 세계에 발을 내딛었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입학은 그 첫걸음이 되었다.

### 토끼를 이긴 거북이처럼

“로스쿨에서 배우는 과목은 다 재미있지만 그중에서 헌법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민법이나 형법은 일상생활과 연관된 내용이 많아서 쉽게 와 닿는 반면, 헌법은 아무래도 조금 추상적이어서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수업시간에 ‘투표’와 관련된 내용을 배웠었는데,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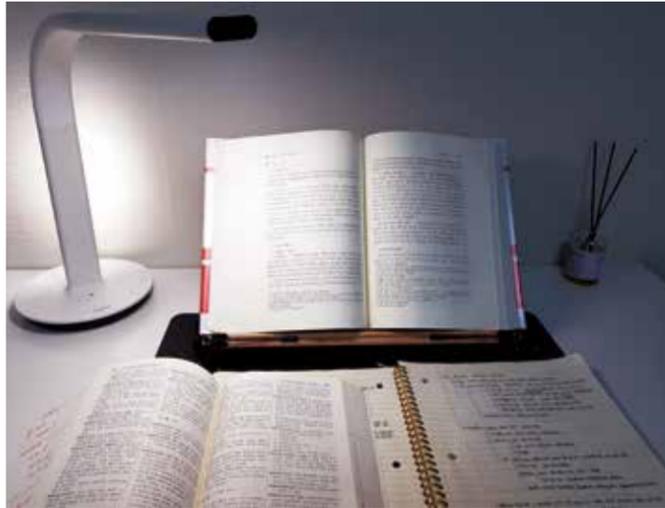
이수호 학생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미 한 차례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탓인지 로스쿨에서의 적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는 로스쿨 입학 자체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고시를 준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저 묵묵히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로스쿨에서의 지난 1년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답이 정해져있는 의대·치대 공부와는 다르게 법학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데, 이러한 사고를 공부하는 게 좋았습니다. 또 아마 외국에서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꼈을 감정이겠지만, ‘같은 공부를 한국어로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한국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 요즘엔 아마도 제가 한국어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이  
수  
호  
  
학  
생



이수호 학생의 책상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웃음), 하루하루 재미있고 보람찬 로스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꿈**

이수호 학생에게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묻자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특히 의학적 지식과 중국어 능력을 살려서 관련 분야의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도 잊지 않았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의료기관과 중국과 한국의 합작 의료기관이 많아졌고,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는 중국인들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중국 내부에서도 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국의 의료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 전공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꼭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요즘은 융합의 시대니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웃음).”

그는 “고등학생 때 담임선생님께서 ‘인생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아서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라고 운을 떼며, 삶에 있어 매일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수호 학생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Lawschool TIP

이수호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1**  
합격을 좌우하는 전략짜기

자신이 추구하는 법조인의 모습, 이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역량과 이에 부합하는 학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대 학생의 경우 역대 입학자들 중 해외대 학생들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동입학설명회를 적극 활용할 것! 설명회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자신의 역량과 부합하는 학교를 매의 눈으로 찾아야 한다.

**#2**  
진짜 승부는 법학적성시험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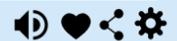
정량지표가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량 점수를 바탕으로 ‘어떻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엔 학점 산출 기준이 한국과 달라서(중국대학교는 절대평가다.) 학점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자기소개서에 자연스럽게 녹이면서 학부 때 받았던 성적장학금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다. 자기소개서에 생각보다 공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대 출신은 외국어, 다양한 경험, 향후 진로 등 특징점이 무궁무진하니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공을 들이기 바란다.

**#3**  
교수가 듣고 싶어하는 답변은 따로 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할 때에는 면접 문제 자체가 답이 정해져 있어 그에 따른 답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로스쿨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 입시 면접 당시 교수님들께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 하셨는지 알 것 같다. 주어진 문제를 보는 기준, 그 기준에 따르면 도출되는 결론, 그리고 예비상황이 주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 기준이 적용가능한지 보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단순히 ‘찬성’과 ‘반대’ 그리고 그에 따른 논거만 준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신이 사형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기준 그리고 만약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아직 법학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이지만, 교수님들께서는 이 학생에게 리얼마인드가 있는지 판단하려는 것이니까!

media essay

DON'T BE A LAWYER!



“ Don't be a lawyer, don't do it - quickest way to ruin your life. Don't be a lawyer not worth it, it'll leave you dead inside. ”

최근 로스쿨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 바로 'Don't be a lawyer'라는 영상이다. 뉴욕에서 성공적인 변호사의 삶을 살던 여주인공이 사랑과 행복을 찾기 위해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내용의 미드인 <Crazy Ex-Girlfriend> 4편에 삽입된 영상으로, '변호사가 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엘리 맥빌'같이 생긴 동료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젠가 대법관이 되면 좋겠지만 대법관이 될 확률이 없다는 매우 슬픈(?) 내용을 경쾌한 음악과 울동에 맞춰서 이야기 하는 이 영상은 미국 로스쿨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내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큰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강렬하게 하고 싶고,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로스쿨 학생들의 심리를 꿰뚫은 뮤직비디오라는 평을 받고 있다.

## 로스쿨의 결원 보충은 시혜가 아니라 응시자의 권리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  
(헌법학)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로 약칭함)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서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우리보다 몇 년 앞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선별적인 인가제도 및 총입학정원 제한과 함께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온 로스쿨제도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 그 주된 도입 이유였다. 이에 뒤따르는 결론은 배출되는 법조인의 양적 확대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로 마땅히 이해된다. 그사이에 등록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기고서 법률시장이 과포화상태라며 변호사협회는 줄곧 로스쿨 총입학정원 감축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고, 작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대비 40%대로 떨어져서 자격시험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져 있다.

개별 로스쿨마다 인가 당시 배정된 입학정원과 함께 전체 입학정원이 제한되는 가운데 일부 입학생들이 재학 중에 건강문제와 적성 결여 내지 타 로스쿨 입학 등으로 자퇴하면서 매년 결원이 발생해왔다. 이 결원 보충과 관련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으로 약칭함)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해당 로스쿨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동 시행령 부칙은 위 개정규정이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로스쿨의 결원 보충이 마치 정부의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결원 보충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로스쿨법 제25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편입학'은 여러 사정상 지금껏 운용되고 있지 않다.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국내 헌법교과서 등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행한 두 개의 판례가 거의 빠짐없이 언급된다.

하나는 1958년의 '약국판결(Apotheken-Urteil)'이고, 다른 하나는 1972년의 '대학 입학정원제한판결 (Numerus-clausus-Urteil)'이다. 약국판결에서 독일연방헌재는 신규 약국 개설시에 거리 제한이 적용되는 당시 바이에른주 약국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로부터 경제적 엄숙주의와 경제보호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까지 서독에서는 학생이 대학입학자격시험(Abitur)을 통과하기만 하면 성적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 어디든 지원하고서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의 대학 진학이 급증하면서부터 일부 학과들에서 실험기자재의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정도로 수용능력에 과부하가 걸렸고, 이로써 이들 학과에 입학정원 제한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맨 먼저 입학정원 제한이 적용되었던 의과대학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의과대학 입학이 불허되자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이 독일연방헌재에서 재판소원사건으로 다루어졌다. 독일연방헌재는 국가재정에 여력이 있는 한 가급적 대학의 수용능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입학정원 제한이 적용되는 해당 학과들에서 기존하는 수용능력의 소진(消盡)을 전제로 해서만 학생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학정원 규정이 정당화된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소개한 두 개의 독일 판례는 우리 로스쿨의 운용에도 나름 큰 의미를 갖는다. 변호사협회 등 관련 직역단체들에서는 법

률시장이 포화상태임을 강조하면서 시장진입자수를 통제하고자 하지만, 이는 법조직역에의 새로운 진입 희망자들 그리고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한 문턱이 여전히 높다고 여기는 많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와는 상충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인구당 변호사수가 여전히 턱없이 적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 변호사수 감축 주장은 그저 직업이기주의의 발로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 설치인가를 득한 전국 25개 로스쿨 전체의 총입학정원이 2천명으로 제한되고, 각 로스쿨별로 배정된 입학정원 또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설치인가를 위한 신청서에서 적시한 입학정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다. 즉 개별 로스쿨마다 수용능력에 상당한 여유가 있어서 배정받은 입학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음을 뜻한다. 그 결과 우리 로스쿨들이 미국의 대다수 로스쿨에 비해 교수당 학생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배정받은 정원의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나서 건강문제, 적성 결여 내지 타 로스쿨 입학 등으로 해마다 상당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대략 110명이 넘고, 전체 입학정원의 약 5%에 해당한다. 물론 이 같은 결원 발생이 해당 로스쿨만의 잘못은 아니다. 이는 특히 재학 중 타 로스쿨에의 지원 및 입학 등으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결과이기도 하다.

먼저 적성 결여와 관련해서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법조직업과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대한 자신의 적성 여부를 학부시절에 법학 관련 과목의 수강 그리고 법조직역에서 일하는 선배나 주변 친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등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를 진지하게 권한다. 이어서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이 2천명으로 제한되는 가운데, 이처럼 다수의 로스쿨에서 매년 발생하는 상당수 결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응시자의 학업 기회와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셈이다. 그러니 로스쿨의 결원 보충은 앞서 언급한 독일연방헌재의 입학정원제한판결에서 확인되듯이 이들 응시자에게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법 제39조에 따른 개별 로스쿨의 학생정원 감축 및 학생모집 정지와 관련해서도 그 제도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특정 로스쿨에서 감축되거나 모집정지 되는 인원만큼 그대로 타 로스쿨 입학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만 위헌성의 시비가 없게 된다. 이는 전체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이 제한됨에 따라서 비롯하는 당연한 법적 결론이다. 따라서 현행 로스쿨법 시행령 부칙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결원 보충은 상시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

# 지역과 함께 하는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종학 교수

## I.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소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1964년 시민법률상담소로 설립되어 1966년 법률상담소로 개칭된 후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되었다가 2018년 3월 대학 부속기관인 법률센터로 출범하였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도시화의 진행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과거 농어촌 법률상담 및 계몽활동을 넘어 법률 전문자문 및 법교육 등의 종합적인 법률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실 및 리걸클리닉실을 마련하여 지역협력 및 학생실무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시설을 준비하였고, 병원에서 벌어지는 수술 컨퍼런스와 유사한 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 등의 새로운 실습 모델도 개발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대전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여러 변호사들이 법률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고, 교내 변호사 등 관련 기관도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익로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법률상담 모습



법률센터 상담실

## II. 주요 활동 내용

### 1. 법률상담 및 자문, 소송구조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지역민, 교내 구성원을 위한 법률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구조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위치한 대전은 세종 및 대전정부청사, 국책 연구단지 등이 소재하고 있어 관련 기관의 법률자문을 요청받아 처리하고 이를 통한 학생들의 실무능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충청지역 법률·의료·사회봉사 (JUMP Together!)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1964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 등의 지역 법률공헌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충남도청 등과 공동으로 충남도 서(島嶼) 지역 의료 및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한국전력대전충남지역본부도 참여하여 여러 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종합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충남대병원 그리고 충남도청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은 섬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고,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상담 또는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전력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는 배전선 정비 등의 사회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3. 법교육

#### 가. 초·중·고등학생 법교육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법교육 및 법진로교육도 수

- 1 지역주민 법률 상담
- 2 모의 재판
- 3 사회 봉사
- 4 병원선 진료





1-3 초·중·고등학생 법교육, 4-5 인공지능과 법 특강현장

행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이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여 생활법률, 법조 진로, 모의법정 체험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법조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히 읍면 소재 학교의 학생에게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시민 법교육(인공지능과 법)**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한국인공지능 법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주제로 지역 연구자 및 시민을 위한 법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전은 과학도시로 연구종사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과 법학의 융합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주제로 2018년 2월 강인공지능과 초지능, 인공지능과 민사책임,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등의 세부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고, 2018년 10월-11월에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4. 지역 시민단체와의 사회문제 해결(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지역 단체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소비자 집단소송 문제, 2월 의료분쟁 관련 문제, 11월 노동(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12월 지방



1-4 각종 컨퍼런스 현장

자치(조례 입법평가) 문제 등의 주제를 법학 및 법률적 측면과 의학, 소비자학 등의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 및 학부생도 참여하여 현재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및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Ⅲ. 참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의 활동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장래

사회에 공헌하는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기에 앞서 배움의 과정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동기부여 및 목표설정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JUMP Together! 행사의 경우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교육에 강사 또는 보조자로 참여하여 법조진로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다짐을 되새기고 법률교육에 대한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현실 사회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현실 사회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法

바야흐로 디지털 문명시대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고, 어느 로펌엔 초당 10억 장의 법률문서를 검토하는 인공지능(AI) 변호사도 근무 중이다. 굳이 무거운 법전을 들고 다니며 책과 씨름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안에 자신만의 법전을 몇 권이고 넣어 다닐 수 있는 오늘날, 로스쿨 학생들이 애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전 어플의 새로운 패러다임**  
**로스쿨 스마트 법전 (공법·형사법·민사법)**  
 ★★★★★

기본서에 두꺼운 법전까지 들고 다녀 어깨 탈골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 바로 '로스쿨 스마트 법전'이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기들과 후배를 위한 혜자로운(?) 마음으로 만들었으니, 그 어떤 어플보다 로스쿨 학생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특히 한 번에 하나의 법령 내에 있는 조문만 볼 수 있는 타 법전 어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동시에 8개의 법전을 한 번의 클릭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8개의 민법전을 동시에 퍼 놓는 효과가 가능해 다른 법령을 찾기 위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졌다. 읽고 있던 법령 조문을 북마크로 설정해 놓을 수 있으며, 한글/한자로 변환이 가능한 것도 로스쿨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로스쿨 스마트 법전의 두 번째 시리즈**  
**대한민국 SMART 노동법/헌법**  
 ★★★★★

로스쿨 스마트 법전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형태와 장점을 그대로 옮겨왔다. <대한민국 SMART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부터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을 담았다. <대한민국 SMART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법과 관련된 법령이 담겨있어 로스쿨 학생을 비롯해 일반 법조인, 노무사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령과 판례의 안내자**  
**국가법령정보(Korea Laws)**  
 ★★★★★

법령,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 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법령 정보를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자는 취지로 제작되었으며, 로스쿨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법령 검색을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조문과 판례, 법령 검색이 타 어플에 비해 비교적 오래 걸리고 형법의 조문 목록만 한자로 표기되어 읽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평이 있다.

 **내손 안에 도서관**  
**법원도서관**  
 ★★★★★☆

법원도서관 웹사이트의 축소판으로 판례 검색, 대법원 중요 판결 검색뿐만 아니라 영문·중문 판례까지 볼 수 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같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화제의 판결'과 접하기 어려운 '해외 사법소식'도 한눈에 알 수 있다. 특히 해외사법소식에는 '법관에게 딸이 있는지 여부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국의 실증적 연구 소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계개편법률안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등 해외 사법 이슈들이 많아 세계적인 추세도 파악할 수 있다. 재미있는 자료와 읽을거리가 무궁무진해 법학도들에게 재미지옥(?)과 같은 어플로 통한다.

 **로앤비를 스마트폰에서도!**  
**LAWnB Professional**  
 ★★★★★☆

국내최대 법률정보 제공사이트인 로앤비(www.lawnb.com)에서 법률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로그인 없이도 판례, 법규, 결정해석, 문헌, 법조인, 기업법무(세무인사, 소송계산 서비스는 제외), 서식, 뉴스 이슈 등 법률전문가와 일반인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볼 수 있다. 로앤비 웹사이트의 유료회원일 경우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고급 정보들을 볼 수 있어 새삼 자본의 힘을 느끼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 하루에 7시간은 자야...

## 잠 못들면 행동요법부터

한국인은 유독 '잠의 양'에 인색하다. 그래서 '사당오락(四當五落)', '얼리버드(early bird)' 같은 말이 생겨났다. 적절한 수면은 건강을 지키는 데 기본이 된다. 수면의 가장 큰 건강 효과는 '회복'에 있다. 수면은 낮 동안 긴장돼 있던 근육, 혈관 등을 이완시키고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일까? 잠이 안와서 고민인 불면증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숙명여대 졸업  
현 헬스조선 취재팀장/ 기자  
현 TV조선 <내몸 사용설명서> 고정 패널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블로그)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인상 수상



### 적절한 수면시간은 7시간

2016년 미국 국립수면연구재단에서는 전 세계 적정 수면 시간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연령별 권장 수면 시간을 발표했다. 결과는 ▲생후 3개월까지 14~17시간 ▲생후 4~11개월 12~15시간 ▲만 1~2세 11~14시간 ▲만 3~5세 10~13시간 ▲만 6~13세 9~11시간 ▲만 14~17세 8~10시간 ▲만 18~25세 7~9시간 ▲만 26세 이상은 7~8시간을 권장했다.

권장 수면 시간 보다 1~2시간 이상 적거나 많으면 비만·심뇌혈관질환·치매·당뇨병 등 온갖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7시간 보다 덜 자면 당뇨병,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는 보고도 많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팀이 19세 이상 남녀 1만49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시간 미만으로 잔 남성의 20.9%가 당뇨병 진단적인 공복혈당장애 상태였다. 하루 7~8시간 자는 남성과 8시간 이상 자는 남성의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은 각각 15.4%, 14%였다. 연구팀은 "적절한 수면 시간은 당 대사, 식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 비만, 당뇨병과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 연구에서는 7시간 미만 자는 사람이 7시간 자는 사람보다 협심증·심근경색 발병을 예측하는 지표인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가 34~50% 높았다.

9시간 이상 자는 사람 역시 7시간 자는 사람보다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가 70% 높게 측정됐다.

### 7시간 폭 자기 어렵다면 행동요법부터

건강을 위해 하루 7시간 폭 자야 하는 것은 알지만, 쉽게 잠이 들지 못하거나 자는 도중 자주 깨는 사람이 많다. 미국내과학회의 불면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면증 개선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행동요법이다. 행동 요법은 불면증을 유발·악화하는 나쁜 수면 습관, 침실 환경, 잠과 불면에 대한 인식 등을 교정하는 것이다.

**① 습관·침실 환경 교정** 숙면을 위해 지켜야 할 생활 규칙을 '수면위생'이라 한다. 수면위생은 크게 수면 습관과 침실 환경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일 똑같은 시각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난다 ▲낮잠 자지 않고, 극도로 졸리면 10~15분 짧게 잔다 ▲매일 아침 또는 낮에 햇빛을 쬐며 같은 시간에 40분 정도 운동한다(잠자리에 들기 5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이내에 따뜻한 물로 30분간 목욕해서 체온을 올린다 ▲수면을 방해하는 커피·홍차 등 카페인 음료, 담배, 술을 피한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이내에는 과식하지 않는다 ▲시계는 잠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자는 중에 껌이라도 시계를 보지 않는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백열등 같은 간접조명을 사용해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자는 중에는 커튼을 쳐서 빛을 완전히 차단한다 ▲침실은 늘 조용하게 유지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선풍기 등 냉방 기구를 이용해 침실 온도를 24~25℃로 낮추고, 호흡기가 마르지 않도록 습도를 40~60% 정도로 유지한다 ▲잠자리에서는 잠만 자고, 책을 읽거나 사색하지 않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는 시간(최소 1시간)을 만든다.

**② 잠자리 인식 개선** 잠자리·취침 시간·잠자리에 대한 인식·잠자리에서의 행동 등을 교정해, 침실과 수면에 대한 인식을 짚는 방법이다. 다음 5단계로 이뤄진다. ①졸리게 아니라 잠이 쏟아질 때 잠자리에 든다 ②잠자리에 누웠는데 15~20분 만에 잠들지 않으면 아예 침실 밖으로 나와서 독서·음악 청취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하고, 잠이 올 때

다시 침실로 들어간다 ③잠이 들 때까지 2번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④늦게 자더라도 아침에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⑤밤에 잠을 못 잤더라도 낮잠을 가끔씩 자지 않는다.

**③ 불면 받아들이 마음 이완** 스트레스, 긴장, 불안 등을 조절하면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완훈련은 마음을 안정시켜 잠이 드는 것을 돕거나, 잠자는 도중 깨는 횟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완훈련은 마음챙김치료, 복식호흡, 간단한 스트레칭 등으로 이뤄진다. 이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방법은 마음챙김치료다. 마음챙김치료는 명상을 하면서 자신이 불면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뒤 수용하는 방법이다. 불면에 대한 불안을 회피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불안해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④ 잠 효율 높이기** 잠을 잘 못 자면 어떻게든 더 자보려고 오래 누워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불면증 완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저녁 9시부터 잠자리에 들어 잠을 청해도, 뒤척이다 새벽 2시가 돼서야 잠을 자면 다음 날 피곤한 것은 같다. 수면제한요법은 눕자마자 잠을 잘 수 있도록 '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우선 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을 실제 잠을 자는 시간으로 나누어 잠 효율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누워 있는 총 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로는 5.5시간만 잠을 자는 사람의 경우, 잠 효율은 68.7%(8분의 5.5×100)다. 이처럼 잠 효율이 85% 이하면, 일단 잠자리에 누워 있는 총 시간을 실제 자는 시간 만큼(5.5시간)으로 줄인다. 이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매일 잠자리에 누운 시각, 불 끄고 잠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 밤에 자다가 깬 횟수·시각, 기상 시각, 커피·홍차를 마신 횟수 등을 기록한 수면일기를 분석한다. 그리고 잠자리에 눕는 시각과 기상 시각 등을 조정해 가며 잠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일주일 평균 잠 효율이 90% 이상으로 늘었다면 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을 15분씩 점점 늘린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불면증을 완화한다.

# 신과 함께, 살인미수범과 함께?

- 영화 「신과 함께 - 죄와 벌」 속 법률 이야기



김혜리 변호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現 장애인 인권 관련 공공기관 변호사

이 달의 영화 1



신과 함께 - 죄와 벌  
판타지, 드라마 | 2017.12.20 개봉 | 139분 | 한국 | 12세 관람가

변호사가 되어서 달라진 것 중에서 하나는, 법률 관련 된 드라마, 영화 등을 더 이상 예전처럼 즐겨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영상물 속에 나온 '멋진 법률가의 상'을 보면서 '법률가의 꿈'을 무리무리 키웠었는데, 되고 나서는 이를 볼 때 휴식 시간인데 일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주인공들이 다 극단적으로 영웅적이거나, 악인이거나 이 둘 중 하나에 속하는 경향이 있기에 일반성도 없기도 하여 보지 않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안 보려고 해도 현실과 다른 점들이 너무 확연히 드러나 보여서 현실성이 없기도 하고, 잘못 표현된 용어, 절차 등이 예민하게 신경 쓰인다는 등의 이유로 보지 않아 왔던 것 같다. 이 기고문의 주제가 '영화 속 법률 이야기'를 다루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늘어놓아서 약간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웃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들은 '각자의 목적'에 충실해야하기 때문에 출발~!

오늘의 영화는 「신과 함께」이다. 2017년 말에 1편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작년 8월에 2편이 나와 두 편 다 관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이 영화를 이미 보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내 글을 읽으면서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테니 영화를 보면

서 나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때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 내려가면 더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김자홍은 '피고', '피고인'?

이 영화 줄거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러하다. 주인공 김자홍(차태현)의 직업이 소방관인데, 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을 구조하다가 죽게 되었고, 저승에서 강림(하정우), 해원맥(주지훈), 덕춘(김향기) 이렇게 세 사람이 이승으로 내려와 김자홍을 저승으로 데려가고, 7개의 형사재판 비슷한 재판을 치르게 한다. 그 모든 재판에서 김자홍이 무죄로 판명되면 김자홍은 이승으로 다시 환생한다. 법을 가까이 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이 매우 친숙하여 처음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요즘에 워낙 재판 관련 드라마가 많기 때문에 역시 낯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영화를 본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어? 저 법률용어는 아닌데?'라고 발견한 용어는 무엇이었나? 필자는 바로 '피고'라는 용어였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만나는 의뢰인들도 이에 대해서 많이 헛갈려 한다. '피고'는 '원고'와 같이 민사재판의 당사자 주체를 말하고,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주체 중 하나이다. 예전에 지성이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제목이 '피고인'이었고, 말 그대로 지성이 형사재판의 피고인 즉, 딸과 아내를 죽였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이었다.

「신과 함께」에서 김자홍이 '피고'로 주로 호칭되는데, 물론 영화 속 나오는 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다른 제3의 재판유형일 수도 있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민사재판보다는 형사재판과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피고인'이라는 용어가 더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 '피고인'과 같이 실무를 하면서 의뢰인들이 많이 헛갈려 하는 대표적인 용어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들면 '소장'과 '고소장'이다. '소장'은 민사적으로 법원에 청구할 일이 있을 때 접수하는 서류이고, '고소장'은 형사적으로 가해

자의 처벌을 구할 때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는 서류이다. 그러나 법정 드라마에서 '소장'이라는 말이 시청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질까 봐 그래서인지 민사법원에 내는 서류에도 '고소장'이라는 말을 쓰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외에도 영상매체물, 기사, 사람들과의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틀린 예가 많으니 그럴 때 여러분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용어를 잘 알아두고, 약간의 잘난 척(웃음)을 섞어서 올바르게 알려주는 건 어떤가?

과연 김자홍은 '피고'일까? '피고인'일까?



김자홍

2. 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 못했던 김자홍의 행위는 살인죄의 '예비·음모', '미수'?

자, 이제 약간은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김자홍은 맨 마지막에 천륜의 재판을 받게 된다. 김자홍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많이 아팠었는데 집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본인과 동생(김수홍)이 어리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가정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되어 어머니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 본인과 동생은 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에 따라서 김자홍은 누워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덮으려고 어머니의 얼굴 위로 베개를 든 채 몇 초간 대기하는 행동을 취한다.

어릴적 형의 행동이 살인죄라고?



김수홍

그러나 김자홍의 뒤에서 자고 있던 동생이 깨어나서 이를 발견하게 되고, 동생은 김자홍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형의 손을 바닥으로 내리려고 한다. 김자홍은 이를 한두 차례 뿌리치고 다시 행동을 취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감정이 폭발했는지 동생을 몇 대 때리고 바로 집을 뛰쳐나간다. 이를 두고 영화에서는 김자홍이 친어머니를 죽인 존속살인죄로 기소되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자홍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하여 두고, 영화에서는 김자홍이 살인죄로만 기소가 되었다고 나오고, 기수인지, 미수인지 따로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법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이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미수', '기수'라는 단어도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미수'는 형법 제1편 제2장 제2절에 규정되어 있다. 법학과, 로스쿨 중간, 기말 시험, 변호사시험 등에 매우 자주 나오는 단골주제이다. '기수'는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의 모든 표지가 실현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김자홍이 영화에서 어머니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죽었을 때 즉, 사망했을 때, 심장이 멈추었을 때 그때 '살인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한다. 이 때 김자홍은 '살인죄의 기수범'으로 기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영화에서처럼 김자홍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지만 중간에 행동을 멈추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어머니가 죽지 않은 경우라면 김자홍은 '기수'가 아니라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기소될 것이다. 즉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

머리가 빙글빙글 한가?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것이다. '왜 미수와 기수를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나요? 말 자체도 머리 아프고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



이다. 언제나 시험을 준비하는 법학과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TV에서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다고 할 때마다 '공부할 게 또 늘었네, 몇 페이지이려나.'하며 울상 짓는 것처럼 '미수'와 '기수' 이 중 하나만 없었어도 공부량이 줄어든 텐데 말이다(웃음).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수'일 때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법률에 의하여 '미수범'일 때 형을 임의적 또는 필수적으로 감면, 감경한다.

그럼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김자홍은 결국 어머니를 죽이지 못했으므로 그럼 '살인죄의 미수범'인 것인가? 결론 짓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쉽사리 단정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수범'으로 인정이 되려면 위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김자홍이 '살인의 실행의 착수'를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는 '범행의 직접개시',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개시'를 의미한다(만약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음모'가 될 것이며, '예비·음모'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된다).

판례의 경우 어떤 사람이 제3자의 자동차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자동차 밖에서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본 행위의 경우에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기 때문

에 예비에 해당하나 절도예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였다(대판 1985.4.23. 85도 464). 그러나 자동차 안에 밉코트를 훔치려고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려고 하다가 발각되었는데 이때 이 사람의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즉, 절도죄의 미수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42조로 처벌된다고 하였다(대판 1986.12.23. 86도2256).

그렇다면 김자홍의 행위는 존속살인죄의 예비·음모인가? 아니면 미수인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베개를 들어서 어머니 얼굴 위로 올렸으니 살인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미수인가? 아니면 베개를 들었으나, 몇 초간 정지하고 있었고, 베개가 어머니 얼굴에 아주 근접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음모인가? 또한 법률 규정상 살인죄의 예비·음모는 처벌대상인가? 이게 아니라 미수라면 미수의 종류 중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아마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중 영화는 영화로만 봐야지 뭐 영화를 가지고 머리를 내저으며 이렇게까지 고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법으로 먹고 살 계획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든 법률적 쟁점만 있으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다음 시간까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고 우리 같이 공유하기로 하자. 그럼 다음 시간에~!

아빠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의 남자 >>>  
연극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왕〉의 저자 소포클레스는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함께 희랍의 3대 비극 작가로 꼽힌다. 전문이 남아 있는 작품들 가운데 희랍 비극의 완벽한 모범이라 불리는 〈오이디푸스 왕〉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현되고 있다. 연극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 왕〉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1월 29일부터 배우 황정민을 필두로 하여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황정민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해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아 버려졌지만 아무리 벗어나려 애써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로 변신한다. 연기파 배우 배해선은 신탁을 피해 갖 낳은 아이를 버리지만 되돌아온 진실에 절망하는 오이디푸스의 어머니 이오카스테로 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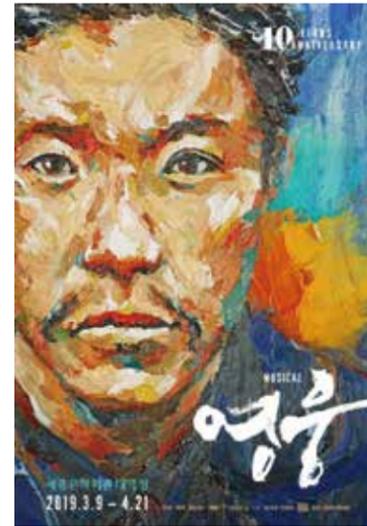
- 공연기간 2019.01.29.(화)~2019.02.24.(일)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티켓가격 R석\_88,000원, S석\_66,000원
-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 비틀즈의 전설 Imagine  
존레논 展

20세기 최고의 아티스트 밴드이자 비틀 마니아라는 사회적 현상까지 불러일으킨 영국의 세계적인 로큰롤 밴드 비틀즈(Beatles). 대중문화의 역사는 비틀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생길 만큼 위대한 밴드의 리더였던 존 레논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아티스트이자 사회 운동가이다. 1980년 갑작스러운 피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대표곡 〈Imagine〉과 함께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이번 전시에서는, 존 레논이 'Imagine' 작곡에 쓴 피아노를 포함해 그가 남긴 음악, 그림, 유품, 사진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 공연기간 2018.12.06.(목)~2019.03.10.(일)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2층
- 티켓가격 12,000원
- 홈페이지 <https://imaginejohnlennon.modoo.at/>



<<< 흔들림 없는 태산처럼  
뮤지컬 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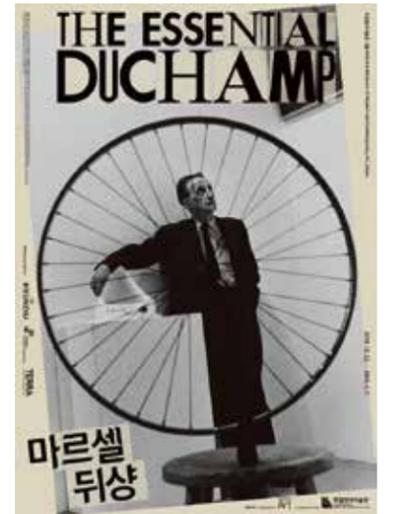
한국 창작 뮤지컬 중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웅〉이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뮤지컬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집중 조명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의 면모와 운명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깊이 있게 담았다. 오는 3월 공연될 '영웅' 10주년 기념공연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이전 공연보다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면서도 현시대를 살아가는 관객에게 맞는 울림을 전달하기 위해 스토리 및 넘버가 부분 수정돼 관객과 만난다.

- 공연기간 2019.03.09.(토)~2019.04.21.(일)
- 공연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티켓가격 VIP석\_140,000원, R석\_120,000원
- 홈페이지 <http://www.sejongpac.or.kr/>

현대미술의 아버지  
마르셀 뒤샹 展 >>>

20세기 개념미술의 선구자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은 프랑스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 미술무대에서 활동하던 아티스트로, 오늘날까지 현대미술의 신화처럼 존재하는 작가이다. 뒤샹은 미술의 창조와 해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뒤샹 사후 50주년 되는 해를 맞아 열리는 본 전시는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다. 필라델피아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뒤샹의 주요 작품 및 아카이브는 물론, 만 레이, 프레데릭 키슬러를 비롯하여 당대 작가들의 관련 작품, 그리고 뒤샹을 소재로 한 사진, 드로잉 작품 약 150점으로 구성된다.

- 공연기간 2018.12.22.(토)~2019.04.07.(일)
- 전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2전시실
- 티켓가격 4,000원
- 홈페이지 <http://www.mmca.go.kr/>



##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 개최



지난 11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는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법률분야 교육의 전문성 강화 방법을 모색하고자 금태섭 국회의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인하대 김인재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홍석모 교수(강원대), 박상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 유동주 기자(머니투데이), 남기욱 이사(대한변호사협회), 문상연 과장(교육부), 박기태 검사(법무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의 좌장은 이승호 건국대 법전원 원장이 맡았으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전국 법전원장 및 학생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법무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담회



11월 9일(금)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는 법무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함께 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법무연수원 측에서는 조은석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이영주 부원장, 안권섭 용인분원장, 박기동 기획과장 등 4인이 참석했으며, 협의회 측에서는 이형규 이사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검찰실무수습 일정 조정 방안,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개선방안과 형사법 교과과정의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제43차 이사회 및 제46차 총회 개최

12월 7일(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제43차 이사회 및 제46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25개교 법전원 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에서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본계획과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사장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투표를 통해 김순석 원장(전남대학교 법전원)이 제9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 2019년도 제1차·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영역회의

지난 12월 3일(월)일부터 5일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는 2019년도 제1차, 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영역회의가 개최됐다. 영역별(공법·형사법·민사법·선택과목) 위원장과 영역별 출제위원 및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시험의 출제 방향 및 출제위원별 출제범위, 업무분담 등이 이루어졌다. 영역회의 이후 개별 출제위원은 분담된 문항을 제작하는 사전 출제를 진행하게 된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대 이사장단 간담회

12월 21일(금) 서울 프라자호텔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대 이사장단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김건식 이사장, 신현운 이사장, 신영호 이사장, 이형규 이사장과 신임 이사장인 김순석 이사장, 김명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사장단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현안 사항과 2019년 새로이 진행되는 연구 과제 및 영역, 1월에 진행되는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법전원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 <2018년 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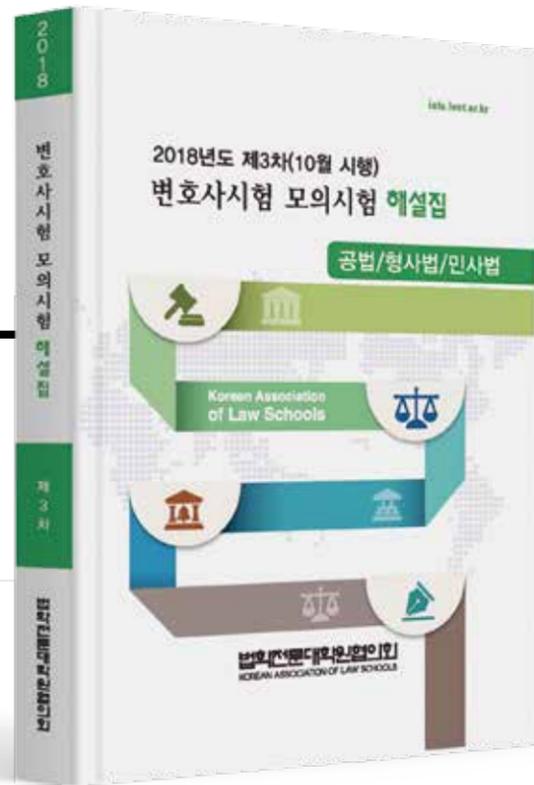
#### <전문법을 교육의 강화를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출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매년 한 해 동안 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 보고서를 책으로 출간한다. 지난 12월에 발간된 <2018 연구보고서>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및 합격률 발표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충북대 이재목),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직역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외대 문재완),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고려대 명순우)이 수록됐다. 이와 더불어 협의회는 인하대 김인재 교수와 강원대 홍석모 교수가 공동 연구한 <전문법을 교육의 강화를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출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발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과 정답률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법전원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을 제작하였다.



### 제작대상

-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 사례형에 한함
- 2018년도 제3차 해설집 (10월 시행) 단행본
- 2018년도 제2차 해설집 (8월 시행) 단행본
- 2018년도 제1차 해설집 (6월 시행) 단행본
- 2017년도 제3차 해설집 (10월 시행) 단행본
- 2017년도 제2차 해설집 (8월 시행) 단행본
- 2017년도 제1차 해설집 (6월 시행) 단행본
- 2016년도 제3차 해설집 (10월 시행) 단행본
- 2016년도 제2차 해설집 (8월 시행) 단행본
- 2016년도 제1차 해설집 (6월 시행) 단행본
- 2015년도 제3차 해설집 (10월 시행) 단행본
- 2015년 발간 해설집 (2014년도 제2차, 제3차, 2015년도 제1차)
- 2014년 발간 해설집 (2013년도 제2차, 제3차, 2014년도 제1차)

### 판매가격

- 2018년도 제1차, 제2차, 제3차 : 단행본(각 10,000원)
- 2017년도 제1차, 제2차, 제3차 : 단행본(각 10,000원)
- 2016년도 제1차, 제2차, 제3차 : 단행본(각 10,000원)
- 2015년도 제3차 : 단행본(10,000원)
- 2014~2015년 발간 : 공법(8,000원), 형사법(7,000원), 민사법(9,000원), 3종1SET(24,000원 → 20,000원)

※ 택배비 4,000원(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신청방법 (상시주문)

- 1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lawschool@leet.or.kr) 송부
- 2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 Law Quiz

### Q1 취소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ㄱ. 감사원의 변상판정
- 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
- ㄷ.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 ㄹ.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또는 부적정통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 Q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더라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ㄷ.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 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 ㄹ. 수사기관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Q3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가 이행지체 상태의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 여기서 채무자의 인식 내지 예견가능성 유무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원본과 별개의 채권이나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과 동일하다.
- ④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져 甲이 소유권에 기해 乙 및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甲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중 일부 손해만을 배상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